

서울서부지방법원 2024. 12. 18 선고 2023가단253229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고A 주식회사

피고B

변론 종결 2024. 10. 23.

판결 선고 2024. 12. 18.

주 문

-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-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피고와 소외 C(주민등록번호 1 생략)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. 8. 29. 체결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계약을 C의 지분 22,348,676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22,348,67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피보전채권의 존재

- 1) D 주식회사는 C에 대하여 대여금 지급명령(수원지방법원 2014차전17514)을 신청하여, 2014. 12. 22. 'C은 D 주식회사에게 10,264,465원 및 그 중 9,703,456원에 대하여 2014. 12. 16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3.4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'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, 위 지급명령은 2015. 1. 13. 확정되었다(이 사건 지급명령으로 확정된 대여금 채권을 '이 사건 채권'이라 한다).
- 2) E 주식회사는 D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고, 승계집행문은 2016. 9. 23. C에게 송달되었다.
- 3) 원고는 2021. 1. 22. E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하였고, E 주식회사로부터 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은 원고는 2021. 3. 11. C에게 이 사건 채권의 양수사실을 통지하며 2021. 1. 5. 기준 원리금(원금 9,703,456원, 가지급금 1,834,909원, 미수이자 20,848,676원 합계 32,387,041원)을 통지하였다.

나. 상속재산 협의 분할

- 1) 망 F(이하 '망인')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(이하 '이 사건 부동산')에 관하여 2001. 2. 2.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 망인은 망 G(2000. 11. 15.경 사망)과 사이에 자녀로 H, 피고, C을 남기고 2020. 8. 29. 사망하였다.
- 2) 피고는 2020. 10. 8.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0. 8. 29.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(이하 '이 사건 분할협의')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

다. C의 무자력

- 1) C은 2011. 3. 3. 성남시 분당구 I 임야 18,868㎡ 중 495/18,876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
- 2) C의 위 지분에 관하여 2014. 12. 12. 국세 압류, 2017. 4. 14. 지방세 압류, 2017. 10. 19. 지방세 압류, 2018. 4. 14.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압류등기가 각 마쳐졌다.
- 3) 위 성남시 분당구 J 토지 중 C 소유의 지분에 관하여 2019. 12. 11. E 주식회사의 신청에 의한 강제경매(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K)가 개시되었고, 위 경매절차에서 2022. 8. 3. L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.

4) 위 매각에 따른 배당절차에서 E 주식회사가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원금 9,703,456원, 이자 25,551,917원 합계 35,215,373원에 관하여 배당신청을 하였고, 2022. 8. 25. 실제 배당할 금액 20,692,460원(매각대금 22,073,000원) 중 E 주식회사에 17,433,050원이 배당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.

라.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말소

이 사건 부동산에는 2020. 7. 2. 채권최고액 5억 5,700만 원, 채무자 망인, 근저당권자 한국주택금융공사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,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인 2021. 9. 29.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당사자의 주장

가. 원고의 주장

C이 무자력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으로 소유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한 것은 일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. 원고는 2023. 8. 4. 기준으로 C에 대하여 22,348,676원의 피보전채권을 가지므로, 이 사건 분할협의를 위 피보전채권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, 가액배상으로 피고에 대하여 22,348,67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.

나. 피고의 주장

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망인과 부친이 거주하도록 하였고, 망인과 부친이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면서 발생한 관리비를 모두 피고가 변제하는 등 망인의 재산을 유지하는 데에 기여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 피고가 망인의 재산 형성 및 유지에 특별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단독 소유로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하게 된 것이므로,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.

3. 사해행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

가.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, 그 재산분할결과가

위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,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한다. 이때 지정상속분이나 기여분, 특별수익 등의 존부 등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채무자가 주장·증명하여야 할 것이다(대법원 2001. 2. 9. 선고 2000다51797 판결 등 참조).

나. 살피건대,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,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피고를 비롯한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피고의 기여분을 인정하는 취지의 협의가 함께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므로, 이 사건 분할협의를 따라 C이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였다고 하더라도, 위와 같은 피고의 기여분을 고려한다면 그 재산분할결과가 C의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한다고 보기 어렵다.

1) 망인은 1959. 11. 22. 망 G와 혼인하여 그 사이에 H(장남), 피고(차남), C(삼남)을 두었다.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2. 12. 2. 망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00. 11. 15. 망 G이 사망함에 따라,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원인으로 망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.

2) 망인과 망 G은 1992. 10. 27.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여 왔다. 피고는 적어도 2003. 9. 1.부터는 이 사건 부동산의 관리비를 자동이체 방식으로 납부하여 왔는바, 망인의 재산 유지에 특별한 기여를 하였거나 특별한 부양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.

3) 망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인은 피고와 C뿐만 아니라 H이 존재하는바, 장남인 H 역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권리를 모두 포기하였는바, 형제들 사이에 피고의 기여분을 인정하였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다.

다. 따라서 이 사건 분할협의를 C의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의 감소를 초래한다고 볼 수 없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고, 이 사건 분할협의를 사해행위임을 전제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.

4. 결론

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강지현

별지